

국회의원(윤상현) 징계안

의안 번호	7252
----------	------

요구연월일 : 2025. 1. 6.

요 구 자 : 임미애 · 김성환 · 김원이
김정호 · 문금주 · 문대림
박해철 · 서삼석 · 송옥주
어기구 · 윤종오 · 윤준병
이광희 · 이병진 · 이소영
이연희 · 이원택 · 임호선
전종덕 · 정준호 · 정혜경
주철현 · 차규근 · 채현일
한창민 의원(25인)

주 문

국회의원(윤상현)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높은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있어야 함. 또한 「국회법」 제155조(징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그러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24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농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비난하였음. 이는 국민의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불법으로 매도하는 행위임. 더 나아가 12월 2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트랙터 시위는 겉으로는 농민이라는 이름을 내건 종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체제 교란 시도”라고 주장하며 색깔론을 제기하며 공격하는 발언을 하였음.

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 앞선 12월 21일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과 양곡관리법 거부권 규탄을 외치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집회장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경찰청은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한 통고’를 하며 시내 진입을 가로막았음. 이로 인해 트랙터 주행한 농민들은 남태령 고개에서 혹한 속에 무려 28시간 이상을 갇혀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찰의 과잉통제로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였음. 이러한 경찰의 헌법적 권리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수만 명의 시민이 남태령 고개로 집결하며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의 뜻에 함께 했음.

라. 이러한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농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매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왜곡하는 행위임.

마. 이에 따라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의 취지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며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함.

바. 따라서 국회의원 윤상현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